

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(제38조의5제3호 관련)

1. 코너링조명등의 설치기준

가. 설치위치

1) 너비 방향

코너링조명등은 좌·우 측면에 설치할 것

2) 높이 방향

가) 코너링조명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

나) 코너링조명등 발광면의 최상단은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최상단보다 낮게 설치할 것

3) 길이 방향

코너링조명등은 자동차 앞면으로부터 1,000밀리미터 이하일 것

나. 관측각도

코너링조명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·하측 10도·자동차 외측으로부터 30도 이상 6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

다. 작동조건

1) 코너링조명등은 주행빔 전조등 또는 변환빔 전조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점등되는 구조일 것

2) 방향지시등이 점등되는 방향 또는 조향핸들이 조작되는 방향의 코너링조명등은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

3) 방향지시등이 소등되거나 조향핸들이 정위치로 되돌아가는 경우 코너링조명등은 소등되는 구조일 것

4) 방향지시등 또는 조향핸들의 위치와 무관하게 후퇴등이 점등되는 경우 양측의 코너링조명등은 동시에 점등될 수 있으며, 후퇴등이 소등되거나 자동차 속도가 전방으로 매시 10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 코너링조명등은 소등되어야 한다.

라. 그 밖의 기준

코너링조명등은 자동차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

2. 코너링조명등의 광도기준

가. 최대광도

측정점 및 측정구역(각도)	광도(cd)
1U-L ~ R 윗부분	300 이하
H선과 1U-L ~ R 사이	600 이하
0.57D-L~R 아랫부분	14,000 이하

나.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

측정점 및 측정구역(각도)	광도(cd)
2.5D-30L	240 이상
2.5D-45L	400 이상
2.5D-60L	240 이상

주)

1. 우측은 대칭으로 적용할 것
2. 양산자동차 코너링조명등의 광도기준은 ± 20 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.